

	직원징계 재심위원회 규정	문서번호	5-1-28		
		제정일	2013. 03. 11.		
		개정일			
		페이지	1/3	관리 부서	사무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교법인 의담학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 및 대학의 직원이 징계처분,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직원징계재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직원의 재심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정관 등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(조직) ① 본 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. 다만, 직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재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.

- 1.법관 또는 변호사직에 있는 자
- 2.법인 이사
- 3.법인이 유지 경영하는 대학의 장

제4조(위원장 선출 및 직무) ①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.

②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.

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재심위원회의 심사) ① 본 위원회는 직원이 징계처분,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재심청구를 제출하여 이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.

② 본 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실의 조사 또는 증인의 환문과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③ 본 위원회가 재심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요구 기관이나 관계관을 증인으로 소환할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④ 본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한 학식, 경험이 있는 자에게 감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.

제6조(심사의 범위) 본 위원회는 징계 또는 재심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 이외의 사실에 대하여 심사하지 못한다.

	직원징계재심위원회규정		문서번호	5-1-28		
			제정일	2013. 03. 11.		
			개정일			
			페이지	2/3	관리 부서	사무처

제7조(재심청구인의 진술권) ① 본 위원회가 재심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재심청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한 결정은 무효로 한다.

제8조(재심청구의 취하) 재심청구인은 본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청구의 일부 또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.

제9조(재심위원회의 결정) ① 본 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본 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된 재심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사항에 관한 재심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.

1.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

2.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 있는 사항

③ 본 위원회가 재심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징계위원회의 구성, 징계의결, 기타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징계의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하지 않고, 징계사유가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재심사건에 대하여는 당해 재심사건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.

또한 징계처분이 법령의 적용,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징계처분을 파기하고 처분권자에게 환송하여 다시 징계를 하게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파기환송 결정에 따른 징계와 기타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제10조(재심심사결정서 작성) 본 위원회가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

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심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이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.

1.재심사건 당사자의 표시

2.결정주문

3.결정이유와 개요

4.증거와 판단

제11조(재심심사결정서의 송부) ① 재심심사결정서는 그 정본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재심청구인과 처분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 심사결정서를 송부함에 있어 그 결정서가 본 위원회의 과

	직원징계 재심위원회 규정		문서번호		5-1-28	
			제정일		2013. 03. 11.	
			개정일			
			페이지	3/3	관리 부서	사무처

실 없이 재심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심청구인의 주소와 성명, 결정주문을
공고하고 공고한 날로부터

2주일이 경과한 날에 결정서는 당해 재심 청구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.

제12조(재심결정의 효력)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본 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.

제13조(재심위원회의 간사 등) ① 본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.

② 간사와 서기는 법인 소속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.

제15조(운영세칙) 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
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.